

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

등록번호	농업정책과-10348
등록일자	2025. 3. 31.
결재일자	2025. 3. 31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농지관리팀장	농업정책과장
문채영	안유빈	전결 2025. 3. 31. 김조향
협조자		

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추진계획(안)

□ 사업추진 및 세부계획 □

- 사업내용 :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실시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지원대상 :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
홀수년도에 출생한 51세~70세 여성농업인

내 삶을 바꾸는
희망 화성

(농업 정책 과)

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

사전 검토항목(Check List)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(* 비고: 참고사항 등을 필요 시 기재)

분야		점 검 내 용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고
지 속 가 능 성	경 제	◦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검토 예) 사회적 경제, 청년일자리, 공동체 활성화, 사회공헌 등			
		◦ 친환경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검토 예) 환경친화형 일자리, 안전하고 좋은 저소득여성노안한부모 일자리 등			
		◦ 지역 산업생태계 촉진 검토 예) 친환경 산업 촉진, 산업 에너지 자립, 고용창출, 지역생산물 등			
	사 회	◦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검토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, 노인, 이주민 등			
		◦ 사회적 불균형·불평등 해소 방안 검토 예) 지역 균형발전,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, 성인지 감수성 등			
		◦ 정책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 검토 예) 인적·물적 피해, 이해관계자 간, 세대 간, 지역 간 갈등 등			
	환 경	◦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연관성 검토 예)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, 친환경에너지 생산, 기후변화 적응 등			
		◦ 육상·해양 생태계 영향 여부 검토 예)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조성 계획 등			
		◦ 자원의 소비와 폐기의 적정성 검토 예) 오염물질 배출 여부, 재활용 가능성, 자원 적정 투입 등			
	협 치 연 계	◦ 협치·연계할 정책 및 주체와의 협력방안 검토 예) 중앙부처 사업 연계, 시민단체·주민협력, 타부서 업무연계 등			
		◦ 타 정책과의 시너지 및 상충성 검토 예) 교통정책과 온실가스 감축,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등			
		◦ 시민의견 반영 및 의견수렴 방안 검토 예) 주민·이해관계인 의견수렴, 시민참여 방안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		
재원 확보		◦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예) 국도비, 보조금 등 확보(본예산, 추경 등), 기금 활용 등			
홍보 계획		◦ 효과적인 홍보 계획 검토 예) 보도자료, 교육, SNS, 홈페이지, 주민안내 등			
규정 검토		◦ 사무전결 처리규칙 전결사항 검토 예) 시장 결재, 부시장 전결, 실국소장 전결 등			
		◦ 관련 법령·규정 등 절차 검토 예) 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회, 의견청취, 고시·공고, 계약심사 등			
		◦ 청탁금지법 등 청렴사항 검토 예) 후원·협찬 규정 준수, 외부강의, 음식물제공 등			
		◦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기념품 및 경품제공, 기부행위 등			

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계획(안)

◆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

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5. 1. ~ 12.
- 사업대상: 화성시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~70세 여성농업인
*('25년 1월1일 기준, 55. 1. 1. ~ 74. 12. 31.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)
- 지원내용: 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- 근거법령: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제 11조의 3
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14조

II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검진절차

- (검진대상자) : 화성시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~70세 여성농업인
- (신청·접수) : 각 출장소 및 읍·면·동에 사전신청을 하거나 지정 검진 의료기관에 검진대상자가 직접 신청 가능
- (검진절차)
 - 현장검진(검진버스가 당일 각 출장소 및 읍·면·동 방문)
 - ※ 검진대상자에 해당하나,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발급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출장소 및 읍·면·동 방문 후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) 작성하고 검진 가능
 - 건강검진 실시(약 2시간 소요), 당일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
* 검진항목(5영역 10항목, 추가 설문조사 포함), 사후 예방교육(4항목)

III

사업추진체계

[업무 흐름]	[시기]	[주요내용]
① 사업지침 수립	전년11월	▶사업시행지침 수립(농식품부)
② 지자체 인원배정	전년11월	▶참여 지자체 및 인원 확정(농식품부→시도→시군구) -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비율에 따라 지자체별 인원배정안 통보, 시·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·도에서 최종 확정
③ 검진관리기관 공모·선정	전년12월	▶검진관리기관 공모 및 선정(농식품부) - 검진 DB 구축, 검진의료기관 지정·관리, 의료진 교육 및 메뉴얼 제작, 수검자 관리, 홍보 등 수행
④ 검진의료기관 지정	2월	▶검진의료기관 지정(검진관리기관) - 지정요건을 갖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검진관리기관에서 지정 - 검진의료진 교육과정 이수 필수
⑤ 검진대상자 선정	4월~5월	▶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(지자체→검진관리기관) - 검진대상자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, 개별 통보 및 명단 제출 * 지자체가 개별 통보 후 검진관리기관에 일괄 명단 제출
⑥ 검진시행	6월	▶자금교부 및 집행(농식품부→시도→시군구→의료기관) - 검진실시 후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비 집행
⑦ 이행점검	연중 (분기별)	▶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(지자체, 검진관리기관) - 검진대상자 수검 현황,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, 홍보실적 등 보고
⑧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·반납	다음연도 1월	▶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(지자체, 검진관리기관) -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-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
⑨ 사후관리	설치 후 5년	▶사후관리 -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 5년간 사후관리

IV 추진계획

- 2025. 3. 사업시행지침(안) 및 사업신청 알림
- 2025. 4. ~ 5.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2025. 6. 2. ~ 6. 11. 검진시행
- 2025. 12.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

끝.